학교법인 광운학원
2019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9. 12. 18(수)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회의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16:00-18:10
2. 회의장소 :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서울 23층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통일로 78)
3. 참 석 자 :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 이사	6명	조선영(이사장), 천장호, 권순도, 이종민, 김기영, 오승훈
불참 이사	1명	이종수
참석 감사	1명	정찬우
불참 감사	1명	이세중
배 석	1명	이세원 과장

4. 안 건

가) 보고안건

- ❑ 제2019-23호 : 전차이사회 회의록 채택(2019년 제6차: 2019.11.13.)
- ❑ 제2019-24호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처분 결과 보고
- ❑ 제2019-25호 : 2020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안)
- ❑ 제2019-26호 :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안)
- ❑ 제2019-27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나) 심의안건

- ❑ 제2019-40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1) 직제규정 개정(안)
  2)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4)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교육전임교원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7)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 제2019-41호 :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
2)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제청(안)
3) 전임교원 소속 및 직종(트랙)변경 제청(안)

❑ 제2019-42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제2019-43호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자격인정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 건
❑ 제2019-44호 : 광운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건
❑ 제2019-45호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
❑ 제2019-46호 : 광운초·남대문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멸실 및 증축에 관한 건
❑ 제2019-47호 :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제2019-48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제2019-49호 :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다) 기타안건
❑ 법인사무처 조직 정비 건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5. 회의내용

- 이세원 과장 : 재적이사 7분 중 6분의 참석으로 의사 정족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 조선영 이사장 : 2019학년도 제7차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보고안건 제2019-23호 : 전차이사회 회의록 채택(2019학년도 제6차 : 2019.11.13)
- 조선영 이사장 : 이사들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전차이사회 회의록 채택에 동의하다.

❑ 보고안건 제2019-24호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처분 결과 보고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처분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다.
- 이사 전원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처분 결과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보고를 받아들이다.

❑ 보고안건 제2019-25호 : 2020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안)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20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고안건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간서명	조선영	전승도	이승훈

- 이사 전원 : 2020학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보고를 받아들이다.

❑ 심의안건 제2019-26호 :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사 전원 : 남대문중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보고를 받아들이다.

(광운대학교 정영욱 기획처장, 김주찬 교무처장, 곽경호 기획평가팀장 입실하다)

❑ 보고안건 제2019-27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정영욱 기획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권순도 이사 :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이론/실습 과목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정영욱 기획처장이 답변하다.
- 조선영 이사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곽경호 기획평가팀장이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보고를 받아들이다.

❑ 심의안건 제2019-40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1) 직제규정 개정(안)
2)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4)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교육전임교원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7)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정영욱 기획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1) 직제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1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2)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순도 이사 : 승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 김주찬 교무처장이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2 :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20.03.01.)

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3 :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4)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순도 이사 : 학과 소속으로 변동시 교원 확보율 변동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 김주찬 교무처장 : 학과의 교원 확보율은 높아지고, 전체 교원 확보율은 변동이 없음을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4 :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5) 교육전임교원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교육전임교원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천장호 이사 : 교육전임교원의 학과 소속 변경시 교수업적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다.
- 김주찬 교무처장 : 본인의 소속 변경 희망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므로,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하에 진행됨을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동훈

※ 붙임5 : 교육전임교원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교원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김주찬 교무처장 : 일반전임교원과 형평성 조정을 위한 개정임을 추가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6 :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7)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7 :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 정영욱 기획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붙임8 :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전문 1부.
(시행일 : 2019.12.26.)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0호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2019-41호 : 광운대학교 교원에 관한 건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
2)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제청(안)
3) 전임교원 소속 및 직종(트랙)변경 제청(안)

- 조선영 이사장 : 김주찬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

간서명	조선영	김주찬	오승훈

- 김주찬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일반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 8명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임용기간	임용일
일반전임교원	전자공학과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전기공학과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컴퓨터정보공학부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일반전임교원	정보융합학부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융합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국어국문학과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전임교원 부교수 ▪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법학부			▪ 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경영학부			▪ 전임교원 부교수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 특별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 3명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임용기간	임용일
특별전임교원	경영학부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조교수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인제니움학부대학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조교수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조교수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근무	2020.03.01~2022.02.28	2020.03.01

■ 외국인특별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 1명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임용기간	임용일
외국인특별전임교원	국제교육원			▪ 외국인특별전임교원 조교수 ▪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근무	2020.03.01~2021.02.28	2020.03.01

간서명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김기영 이사 :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김주찬 교무처장이 적극 노력할 것을 답변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퇴장 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2)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제청(안)

- 김주찬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 : 5명

번호	학과 및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제청사항		
					내용	기간	일자
1	정보융합학부	일반전임	조교수	[redacted]	부교수	2020.03.01 ~ 2026.08.31	2020.03.01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교수	2020.03.01 ~ 2022.02.28	2020.03.01
3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교수	2020.03.01 ~ 2022.02.28	2020.03.01
4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redacted]	부교수	2020.03.01 ~ 2022.02.28	2020.03.01
5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redacted]	부교수	2020.03.01 ~ 2022.02.28	2020.03.01

■ 재임용 대상자 : 15명

번호	학과 및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제청사항		
					내용	기간	일자
1	영어산업학과	일반전임	조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6.02.28.	2020.03.01
2	전자통신공학과	특별전임 (교육트랙)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3.02.28	2020.03.01
3	글로컬교육센터	특별전임 (교육트랙)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3.02.28	2020.03.01
4	전자통신공학과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5	환경공학과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6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4.01. ~ 2022.03.31	2020.04.01
7	인제니움 학부대학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8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9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10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redacted]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동훈

번호	학과 및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제청사항		
					내용	기간	일자
11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12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재임용	2020.04.01. ~ 2022.03.31	2020.04.01
13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14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15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조교수		재임용	2020.03.01. ~ 2022.02.28	2020.03.01

■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 : 2명

번호	학과 및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제청사항			비고
					내용	기간	일자	
1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특별전임 (연구트랙)	부교수		조건부 재임용	2020.03.01.~ 2023.02.28.	2020.03.01	2020년 2월말까지 교육점수 36.95점 이상 추가 확보
2	글로컬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조건부 재임용	2020.03.01.~ 2022.02.28.	2020.03.01	2020년 2월말까지 연구점수 80점 이상 추가 확보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순도 이사 :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과 보고를 요청하고, 김주찬 교무처장이 보고할 것을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1호 2)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3) 전임교원 소속 및 직종(트랙)변경 제청(안)

- 김주찬 교무처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전임교원 소속 및 직종(트랙)변경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소속 변경 대상자 : 5명

소 속	직급	성 명	제청사항	
			내용	일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명 :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근무 면 : 인제니움학부대학 근무	2020. 03.01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교수		명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융합과학과 근무 면 :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근무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교수		명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융합과학과 근무 면 :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근무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교수		명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융합과학과 근무 면 :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근무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부교수		명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융합과학과 근무 면 :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근무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용훈

■ 직종(트랙) 변경 대상자 : 23명

소 속	직급	성 명	제청사항	
			내용	일자
전자통신공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2019. 12.26
건축공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정보콘텐츠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정보콘텐츠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법학부	조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인제니움학부대학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조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조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글로컬교육센터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글로컬교육센터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글로컬교육센터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스마트융합대학원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글로컬교육센터	부교수		명 :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 면 : 특별전임교원(일반트랙)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순도 이사 : 국어국문학과 교원 인원에 대해 질의하고, 김주찬 교무처장이 신규 임용 인원을 포함하여 7명이고 1명은 정년퇴직 예정임을 답변하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1호 3) 전임교원 소속 및 직종(트랙)변경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광운대학교 정영욱 기획처장, 김주찬 교무처장, 곽경호 기획평가팀장 퇴실하다)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

- 조선영 이사장 : 심의안건 제41호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에 대하여 심사절차, 총장면접 결과 등을 추가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신규임용 대상자의 심사절차에 대해 논의한 후,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1호 1) 2020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2019-42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20.2.24. 임기 만료 예정인 정찬우 감사의 후임 임원(개방감사) 선임 건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다. 개방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정관 25조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단수 추천한 1인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내용과 추천된 자의 이력사항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개방감사 선임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교육이사 ·친인척)
배 홍 기				-

- 권순도 이사의 동의와 천장호 이사의 재청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배홍기를 정찬우 감사의 후임 감사로 선임하는데 전원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2020.2.24.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세중 감사의 연임(중임) 건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 감사 연임(중임) 후보자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교육이사 ·친인척)
감사	이세중				-

- 권순도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으로 이세중 감사의 연임(중임)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2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임기만료 임원 : 개방감사 정찬우(1952.01.19) / 임기만료일 : 2020.02.24
  - ■ 선임 임원 : 개방감사 정찬우 후임으로 배홍기(1962.12.03)을 개방감사로 선임 / 임기 : 2020.02.25.~2022.02.24.(2년)
  - ■ 연임(중임) 임원 : 감사 이세중 / 임기 : 2020.02.25.~2022.02.24.(2년)
  - ■ 임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직 명	성 명	임 기	비고	직명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장 (제13대)	조선영	2016.1.7- 2021.1.6		이사장 (제13대)	조선영	2016.1.7- 2021.1.6	
이 사	이종수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이종수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천장호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천장호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개방)	권순도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개방)	권순도	2016.1.7- 2021.1.6	교육이사
이 사	이종민	2018.5.24 -2021.1.6		이 사	이종민	2018.5.24 -2021.1.6	
이 사	김기영	2018.7.2- 2021.1.6		이 사	김기영	2018.7.2- 2021.1.6	
이 사 (개방)	오승훈	2019.9.18- 2024.9.17		이 사 (개방)	오승훈	2019.9.18- 2024.9.17	
감 사 (개방)	정찬우	2018.2.25- 2020.2.24	공인회계사	감 사 (개방)	배홍기	2020.2.25- 2022.2.24	공인회계사
감 사	이세중	2018.2.25- 2020.2.24	변호사	감 사	이세중	2020.2.25- 2022.2.24	변호사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 **심의안건 제2019-43호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자격인정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 건**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법인 인사소위원회 심사 및 후보자 추천 결과 및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 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법인 인사소위원회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후보자 추천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소속	직위	성명	
1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2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 이사 전원 : 법인인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1순위자인 이상종 교사를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선정 및 교장으로 임용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3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선정 및 교장 임용 건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일자	비고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교사	이상종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교장	2020.03.01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임용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전자공업 고등학교	교사	이상종		임. 교장(승진) 임기: 2020.3.1-2023.8.31	2020.03.01	교장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 **심의안건 제2019-44호 : 광운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건**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광운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종별	임용예정학교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일자	비고
광운초등학교	교감 직무대리	한성희		초등 1정	광운초등학교	교감	교감자격증 취득후 즉시임용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4호 광운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건이 제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 **심의안건 제2019-45호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

- 조선영 이사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 복직 대상자

소속	직위 (과목)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전자 공업고등학교	교사 (전기·전자·통신)			명. 복직	2020.01.01	고용휴직 (2018.1.8-2019.12.31)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5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복직 제청(안)이 제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2019-46호 : 광운초·남대문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멸실 및 증축에 관한 건**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초·남대문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멸실 및 증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 ■ 광운초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멸실(철거)

소재지	건물명	층수	연면적(㎡)	구 조	준공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26외38필지	로울러장	1	661	철골조	1985	
합 계			661			

  - ■ 광운초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증축

소재지	건물명	층수	연면적 (㎡)	구 조	공사 예정기간	공사금액(원)	
						장위1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체 부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26외38필지	다목적실	지상1층	652.81	철근 콘크리트	2019.7~ 2019.12	847,000,000	0
합 계			652.81			847,000,000	

간서명	조선영	전노도	오동훈

■ 남대문중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멸실(철거)

소재지	건물명	층수	연면적(㎡)	구 조	준공년도	비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95길 28(장위동)	야외화장실	지상1층	7.82	평스라브	1999	
합 계			7.82			

■ 남대문중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증축

소재지	건물명	층수	연면적 (㎡)	구 조	공사 예정기간	공사금액(원)	
						교육청지원비	자체부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95길 28(장위동)	강당겸 체육관/ 급식실및 학생식당	지상1층	740.65	철근 콘크리트조	2019.07~ 2020.01	3,625,342,000	310,000
		지상2층	722.35				
		지상3층	190.17				
		옥 탑 (연면적제외)	27.09				
합 계			1,653.17			3,625,652,000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상정 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6호 광운초·남대문중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 멸실 및 증축에 관한 건이 제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2019-47호 :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전원 :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7호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이 제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붙임9 :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행일 : 2019.12.26.)

❑ **심의안건 제2019-48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간서명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원로교사 임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전원 : 상정안건에 대하여 논의 후,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하다.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반대로 심의안건 제48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2019-49호 :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조선영 이사장 : 이세원 과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시하다.
- 이세원 과장 :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조선영 이사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순도 이사 : 제10조(기타)와 부칙 제1조(준용규정)이 중복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 이종민 이사 : 제10조를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참고해서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준용규정)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다.
- 이사전원 : 이종민 이사가 제시한 수정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조선영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9호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붙임10 :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1부.

  (시행일 : 2019.12.26.)

6. 기타안건

1) 법인사무처 행정조직 정비 건

- 조선영 이사장 : 법인사무처 행정조직 정비를 위하여 대학 소속 직원 중 을 사무처장으로, 을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겸직 인사발령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2)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대표자 선임 건

- 조선영 이사장이 조선영 이사장, 권순도 이사, 오승훈 이사를 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간서명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7. 폐회

조선영 이사장이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9학년도 제7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함.

작성일자: 2019년 12월 26일
작 성 자: 과장 이 세 원 (서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임원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불참

이 사 천 장 호 (서명)

이 사 권 순 도 (서명)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감 사 정 찬 우 (서명)

감 사 이 세 중 (서명) 불참

간서명			

[붙임1] 직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직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생략> **제 3 절 대학, 학과** (중간생략) **제13조(학과장)**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학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2(전공주임교수)** 학부에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1999. 8. 27><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3(외국인 학생 주임교수)** 각 학과(부)에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도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9. 1. 23>	<생략> **제 3 절 대학, 학과** (중간생략) **제13조(학과장)**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학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2(전공주임교수)** 학부에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1999. 8. 27><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3(외국인 학생 주임교수)** 각 학과(부)에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도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9. 1. 23> **제13조의4(PD교수)** 각 학과(부)에 인증PD교수를 두는 경우 인증PD교수는 인증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2019.00.00>	작제신설

고민영 전수도 오승훈

[붙임2]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원 인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별표1] 나. 정년보장교수 승급 * 예술(디자인, 미술, 음악) 전공자의 승급 기준은 인문대학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필수요건 중 KCI 급 주저자 논문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인정하는 실기실적 50점 당 논문 1편으로 대체인정 가능 <개정 2013. 7. 24> *** SCI급 주저자 논문 필수 편수를 초과한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당 KCI급 주저자 논문 2편으로 인정 가능**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로 승급 연구필수요건의 100%까지 대체인정 가능함. (단, 산학협력실적 중 기술이전, 국제특허, 국내특허, 산업체연구비수혜액,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도, 산업체기술 및 경영지도, 창업지도 항목으로만 가능) <개정 2016. 2. 3, 2016. 8. 11>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를 승급 연구필수요건으로 대체인정 할 경우에는 연구논문실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환산적용한다.<신설 2016. 8. 11> ·KCI급 주저자 1편 : 100점 ·SCI급 주저자 1편 : 250점 ·SCI급 공저자 1편 : 125점(3인 저자 적용) *** KCI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Korea Citation Index)** *** KCI급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국제학술지, SCI급(SCI(E), SSCI, A&HCI) 학술지 논문**	[별표1] 나. 정년보장교수 승급 **이공계열: 연구실적 및 연구점수 (2년 심사기준)** **인문계열: 연구실적 및 연구점수 (2년 심사기준)** **교육·봉사 (2년 심사기준)** **만 60세 미만 / 연구:**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2편** **2. 논문점수 290점이상** **3. 연구점수 480점이상**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3편** **3. 논문점수 220점이상** **4. 연구점수 360점이상** 교육·봉사: 년 평균 각 75점 이상 **만 60세 이상 / 연구:**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2편** **3. 논문점수 240점이상** **4. 연구점수 400점이상**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2편** **3. 논문점수 180점이상** **4. 연구점수 300점이상**

구 분		연구필수요건 (심사대상 기간(4년))	교육·봉사 (심사대상 기간(4년))	비고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KCI급 이상 주저자 년 평균 1편(만 55세 미만인 경우 이 중 4년 간 1편 SCI급 주저자 포함,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이 중 4년 간 1편 SCI급 공동저자 포함)	년 평균 각 75점 이상	만 60세 이상의 경우 년 1과목 추가 강의로 연구필수요건 대체 가능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KCI급 이상 주저자 년 평균 1편(만 55세 미만인 경우 이 중 4년 간 1편 SCI급 공동저자 포함)		
	건축학과	·KCI급 이상 주저자 년 평균 1편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KCI급 이상 주저자 년 평균 1편(만 55세 미만인 경우 이 중 4년 간 1편 SCI급 주저자 포함,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이 중 4년 간 1편 SCI급 공동저자 포함)		
	화학과			
	수학과	·KCI급 이상 주저자 년 평균 1편		
	생활체육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정책법학대학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육대학원, 광운한림원 <개정 2013. 7. 24>		· 해당 교원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부)의 기준을 적용. 단, 전공이 일치하는 학부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시,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장 근접한 전공학과(부) 기준을 적용<개정 2013. 7. 24>		

* 주저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

*** 예체능계열 및 수학과는 인문계열 구분으로 적용하며, 이중 예술(디자인, 미술, 음악) 전공자의 실기 실적은 연구점수로 인정함<개정 2013.7.24. 2019.00.00>**

~~*** SCI급 주저자 논문 필수 편수를 초과한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당 KCI급 주저자 논문 2편으로 인정 가능**~~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로 승급 ~~연구필수요건의~~**연구점수의** 100%까지 대체인정 가능함. (단, 산학협력실적 중 기술이전, 국제특허, 국내특허, 산업체연구비수혜액,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도, 산업체기술 및 경영지도, 창업지도 항목으로만 가능) <개정 2016. 2. 3, 2016. 8. 11. **2019.00.00**>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를 승급 연구필수요건으로 대체인정 할 경우에는 연구논문실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환산적용한다.<신설 2016. 8. 11>~~

~~·KCI급 주저자 1편 : 100점~~

~~·SCI급 주저자 1편 : 250점~~

~~·SCI급 공저자 1편 : 125점(3인 저자 적용)~~

~~*** KCI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Korea Citation Indcx)**~~

~~*** KCI급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국제학술지, SCI급(SCI(E), SSCI, A&HCI) 학술지 논문**~~

*** SCI급 : SSCI, A&HCI, SCI(E) 학술지논문<신설2019.00.00>**

*** KCI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OPUS 포함<신설 2019.00.00>**

*** 논문점수 인정범위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16), SCOPUS(11-1), SCI급(10) 학술 게재 논문 실적만 인정<신설2019.00.00>**

* 주저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기준 연령은 평가년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 보직자의 연구기준(연구필수 포함)은 다음과 같음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 보직 기간 동안은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처장 : 보직 기간 동안은 미적용, 보직임기 만료 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의 50%를 적용 * 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봉이 정지되며, 심사기준은 누계됨 *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 · 봉사분야 평가를 하지 않음. 단, 연구분야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해당 학기부터 다음 학기 (1년간)까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2017. 11. 20>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변경 교원은 소속변경 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4년(8학기까지) 동안을 변경 전 소속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속변경 후 4년 초과(9학기부터)는 변경 후 소속 학과(부) 기준 적용함<신설 2018. 4. 20> * 인문사회과학 계열로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소속 변경한 교원은 SCI급 주저자 연구필수 요건을 SCI급 공동저자 논문으로 대체가능<신설 2018. 4. 20>	* 60세 기준 연령은 평가 학기 기준 만 나이를 적용함<개정2019.00.00> * 보직자의 연구기준~~(연구필수 포함)~~은 다음과 같음<개정2019.00.00>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 보직 기간 동안은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처장 : 보직 기간 동안은 미적용, 보직임기 만료 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의 50%를 적용 * 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봉이 정지되며, 심사기준은 누계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재심사<개정2019.00.00> *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 · 봉사분야 평가를 하지 않음. 단, 연구분야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해당 학기부터 다음 학기 (1년간)까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2017. 11. 20>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변경 교원은 소속변경 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4년(8학기까지) 동안을 변경 전 소속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속변경 후 4년 초과(9학기부터)는 변경 후 소속 학과(부) 기준 적용함<신설 2018. 4. 20> * 인문사회과학 계열로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소속 변경한 교원은 SCI급 주저자 연구필수 요건을 SCI급 공동저자 논문으로 대체가능<신설 2018. 4. 20>
제16조(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①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며, 승급일 기준 지난 4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09. 2. 3> ②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호봉이 정지된다.<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2. 30, 2013. 7. 24, 2016. 1. 8, 2016. 8. 11, 2017. 2. 22, 2017.11.20> ③ 호봉이 정지된 정년보장 교수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심사하여 기준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승급이 된다. 단, 호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심사 기준 점수는 가산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2. 3, 2019.00.00>	제16조(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①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최종승급심사 통과일 이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09. 2. 3, 2019.00.00> ②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호봉이 정지된다.<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2. 30, 2013. 7. 24, 2016. 1. 8, 2016. 8. 11, 2017. 2. 22, 2017.11.20> ③ 호봉이 정지된 정년보장 교수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다시 심사하여 기준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승급이 된다. 단, 호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심사 기준 점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3, 2019.00.00>

	부 칙<2019.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2020년 3월 및 9월 승급 심사는 변경 전 기준 및 실적으로 적용한다. ② 2021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2021년 9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2022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단,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2년 도래한 교원은 신 규정의 승급기준을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2022년 9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단,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2년 도래한 교원은 신 규정의 승급기준을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2023년 3월 1일부터 신 규정 승급기준을 전면 적용한다.

[붙임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심사(1차 심사) 및 전공심사(2차 심사) 내부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부)장(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학과(부)의 전공분야(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 근속년수가 장기인 순서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개정 2014. 4. 18, 2016. 1. 8, 2017. 2. 22> - 당연직 및 위촉직 내부 심사위원의 총 인원은 해당 학과(부) 전임교원수가 8명 이하일 경우 4명, 9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수가 4명 미만인 학과(부)의 경우에는 위 ②항의 당연직 위원이 신청하고 총장이 승인에 의하여 유사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의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② 전공심사(2차 심사) 외부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 수의 1/3이상으로 하되 내부 심사위원이 4인일 경우 2인, 6인일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③ 외부 심사위원은 초빙 분야별 해당 학과 재직 교수가 1인당 2명 이내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4. 18> ④ 총장면접(3차 심사)을 위한 총장면접단은 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총장이 지명하는 1인의 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심사(1차 심사) 및 전공심사(2차 심사) 내부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부)장(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학과(부)의 전공분야(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개정 2014. 4. 18, 2016. 1. 8, 2017. 2. 22, 2019.00.00>** - 당연직 및 위촉직 내부 심사위원의 총 인원은 해당 학과(부) 전임교원수가 8명 이하일 경우 4명, 9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수가 4명 미만인 학과(부)의 경우에는 위 ②항의 당연직 위원이 신청하고 총장이 승인에 의하여 유사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의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② 전공심사(2차 심사) 외부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 수의 1/3이상으로 하되 내부 심사위원이 4인일 경우 2인, 6인일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③ 외부 심사위원은 초빙 분야별 해당 학과 재직 교수가 1인당 2명 이내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4. 18> ④ 총장면접(3차 심사)을 위한 총장면접단은 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총장이 지명하는 1인의 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생략>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 선정 방법 변경 부칙신설

[붙임4]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조(임용분야 및 자격) ① 교육전임은 특수대학원 또는 특별 목적 사업분야에 한정하여 임용한다. <생략>	**제4조(임용분야 및 자격)** ① **교육전임은 특수대학원, 학과(부) 또는 특별 목적 사업분야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19.00.00> <생략>	학과소속 가능하도록 변경
제13조(복무) ① 교육전임은 주 4일 이상 출근하며, 교수 및 학생지도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전임은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 교내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육전임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6. 1. 8> <생략>	**제13조(복무)** ① 교육전임은 주 4일 이상 출근하며, 교수 및 학생지도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전임은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학과(부) 소속 교육전임과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 교내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육전임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6. 1. 8, 2019.00.00> <생략>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학과소속 교육전임 시수 정리 부칙 신설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업적평가 시행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

영역	평가항목	평가사항	기준점수 및 인정율	기관별 년 상한 점수								
				특수 대학원						인제니움학부대학		
				스마트융합	경영	교육	상담복지정책	환경	건설법무	취업	언어	정보
교육(100점)	강의	강의계획서 게재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수강신청 전 게재 : 2점/과목 개강 전 게재 : 1점/과목 개강 후 게재 : 0점/과목 미 게재 : -1점/과목	12	12	12	12	12	12	20	12	12
		강의계획서 실천여부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12	12	12	12	12	12		12	12
		출석점검 충실도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12	12	12	12	12	12		12	12
		휴강 및 보강 여부	기본(휴강 無) : 5점 결강 시간당 : -1점	10	10	10	10	10	10		10	10
		책임시수 이행	책임시수 담당 : 1점 책임시수 초과 1시간 당 : 1점 책임시수 미만 1시간 당 : -1점	6	6	6	6	6	6		6	6
		강좌별 홈페이지 운영	강좌 당 : 1점	6	6	6	6	6	6		6	6
		강의평가	4.7 이상 : 10점 4.5 이상 : 9점 4.3 이상 : 8점 4.0 이상 : 7점 3.7 이상 : 6점 3.5 이상 : 5점 3.5 미만 : 0점	20	20	20	20	20	20	20	10	10
		소 계		78	78	78	78	78	78	40	68	68
	학생지도	대학원생 논문 지도	1명 당 : 2점	10	10	10	10	10	10			
		개인별 학생 면담지도	면담횟수≥(지도학생수)이상 : 3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7이상 : 2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이상 : 1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미만 : 0점	6	6	6	6	6	6	30	10	10
		Office Hours	주 3회 이상 : 5점 주 2회 : 3점 미 이행 : 0점 주 1회 : 1점								10	10
		소 계		16	16	16	16	16	16	30	20	20
	기타활동	교과과정 및 교수법 개발	1건 당 : 1점	6	6	6	6	6	6	30	12	12
봉사(100점)	교내봉사	입학 기여도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A급 : 90% B급 : 70% C급 : 50% F급 : 0%	50	40	30	40	40	40			15
		단기과정 운영			20			10			10	
		입시 홍보		10		10			20			20
		각종 회의참석 및 기타 행정지원		5	5	10	15	10	5	30	10	10
		학생 단체활동 지원		10	10	15	15	10	10	10	20	20
		수익창출 프로그램 개발		10	10	15	15	5	10		10	10
		취업지도								40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5	
		개설강좌 관리									20	20
		보직수행	교학부장 : 5점 학과장(지도교수) : 3점 운영위원회 위원 : 1점	5	5	10	5	5	5	10	5	5
		소 계		90	90	90	90	80	90	90	90	100
	교외봉사	교외 각종활동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A급 : 90% B급 : 70% C급 : 50% F급 : 0%	10	10	10	10	20	10	10	10	
연구	연구	년 평균 78점 이상										

개 정 (안)

[별표1]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

영역	평가항목	평가사항	기준점수 및 인정율	기관별 년 상한 점수 <좌동, 언어 삭제>
교육(100점)	강의	강의계획서 게재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수강신청 전 게재 : 2점/과목 개강 전 게재 : 1점/과목 개강 후 게재 : 0점/과목 미 게재 : -1점/과목	<좌동, 언어삭제>
		강의계획서 실천여부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출석점검 충실도 (기준시간 내 3과목까지 인정)	충실 이행(90%이상) : 2점/과목 다소 미흡(80%이상) : 1점/과목 미 이행 : 0점/과목	
		휴강 및 보강 여부	기본(휴강 無) : 5점 결강 시간당 : -1점	
		책임시수 이행	책임시수 담당 : 1점 책임시수 초과 1시간 당 : 1점 책임시수 미만 1시간 당 : -1점	
		강좌별 홈페이지 운영	강좌 당 : 1점	
		강의평가	4.7 이상 : 10점 4.5 이상 : 9점 4.3 이상 : 8점 4.0 이상 : 7점 3.7 이상 : 6점 3.5 이상 : 5점 3.5 미만 : 0점	
		소 계		
	학생지도	대학원생 논문 지도	1명 당 : 2점	
		개인별 학생 면담지도	면담횟수≥(지도학생수)이상 : 3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7이상 : 2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이상 : 1점 면담횟수≥(지도학생수)*0.5미만 : 0점	
		Office Hours	주 3회 이상 : 5점 주 2회 : 3점 주 1회 : 1점 미 이행 : 0점	
		소 계		
	기타활동	교과과정 및 교수법 개발	1건 당 : 2점	
봉사(100점)	교내봉사	입학 기여도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A급 : 90% B급 : 70% C급 : 50% F급 : 0%	
		단기과정 운영		
		입시 홍보		
		각종 회의참석 및 기타 행정지원		
		학생 단체활동 지원		
		수익창출 프로그램 개발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개설강좌 관리		
		보직수행	학과장 : 5점 주임(주관)교수 : 5점 운영위원회 위원 : 1점	
		소 계		
	교외봉사	교외 각종활동	상한점수 대비 S급 : 100% A급 : 90% B급 : 70% C급 : 50% F급 : 0%	
연구	연구	년 평균 78점 이상		

* <u>학과(부) 소속 교육전임교원의 교육 및 봉사 업적평가 기준은 교수 업적평가 규정의 교육과 봉사 분야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9.00.00></u>

비고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 학과(부) 추가

[붙임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8조(신규임용) ①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교원특별임용내규를 따른다. <생략>	제8조(신규임용) ①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은 교원특별임용내규를 따른다. 단, 외국인전임의 신규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경우,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 교원 신규임용 내규를 따른다.<개정2019.00.00> <생략>	
제10조(재임용 심사) ① 외국인전임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업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원의 초빙 목적과 역할에 따라 계약으로 따로 정한 재임용 기준 및 복무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9.10.23> 1. 교육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65점(100점 만점) 이상 <개정 2013. 2. 5, 2019.10.23> 2. 봉사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개정 2013. 2. 5, 2019.10.23> 3. 연구 분야 점수가 이공계열의 경우 년 평균 200점(SCOPUS 또는 SCI(E)급 100점 이상), 인문계열 15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급 75점 이상) 이상 <개정 2013. 2. 5> 4.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80점(100점 만점) 이상<호 번호 변경 2013. 2. 5> ② 글로컬교육센터 소속 영어교육담당 외국인전임은 제14조②항의 책임 강의시	제10조(재임용 심사) ① 외국인전임의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업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원의 초빙 목적과 역할에 따라 계약으로 따로 정한 재임용 기준 및 복무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9.10.23> 1. 교육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65점(100점 만점) 이상 <개정 2013. 2. 5, 2019.10.23> 2. 봉사 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단, 글로컬교육센터 소속인 경우 년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개정 2013. 2. 5, 2019.10.23> 3. 연구 분야 점수가 이공계열의 경우 년 평균 200점(SCOPUS 또는 SCI(E)급 100점 이상), 인문계열 15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급 75점 이상) 이상 <개정 2013. 2. 5> 4.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호 번호 변경 2013. 2. 5><개정2019.00.00> ② 글로컬교육센터 소속 영어교육담당 외국인전임은 제14조②항의 책임 강의시	일반전임 교원과 형평성 조정
수 대비 주당 초과 강의시수가 16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3. 2. 5><개정2019.10.23> 1. 해당 기간 중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3.5점(5.0 만점) 이상 2.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80점(100점 만점) 이상	수 대비 주당 초과 강의시수가 16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3. 2. 5><개정2019.10.23> 1. 해당 기간 중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3.5점(5.0 만점) 이상 2. 부서장의 근무양정 소견 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개정2019.00.00> <생략>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전임 교원과 형평성 조정 부칙 신설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붙임7]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복무) 특별전임은 트랙별 공통으로 해당 기관장 및 학과(부)장(교학부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 주관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글로컬교육센터 운영위원 중 총장 지명 1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8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부교수 이상 2인이 해당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주관교수를 대신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과 부교수 이상 2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8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9.10.23., 2019.00.00>	**제11조(복무)** 특별전임은 트랙별 공통으로 해당 기관장 및 학과(부)장(교학부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 주관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글로컬교육센터 운영위원 중 총장 지명 1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부교수 이상 2인이 해당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주관교수를 대신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과 부교수 이상 2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9.10.23., 2019.00.00>	일반전임교원과 형평성 조정
	<생략>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신설

[붙임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전문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안) 전문

제정일 : 2019.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 11조 3항에 의거,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연구학기라 함은 특별전임교원이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학부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기간) 특별연구학기는 6개월로 하며, 3월 1일, 9월 1일에 개시한다.

제4조(자격) 특별연구학기의 수행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휴직, 징계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특별전임교원
2. 특별연구학기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까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
3.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자
4. 특별연구학기 수행 이력이 없는 자

제5조(허가절차) 신청자는 특별연구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학장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6조(심의 및 선정) 특별연구학기 신청자에 대한 심의는 재직기간, 잔여 재직기간, 소속 학과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선정인원) ①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학기당 전체 특별전임교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학과별(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계열고려) 특별연구학기 수혜자는 동일기간 중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간변경 및 취소) 허가된 특별연구학기 수행시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만 가능하다.

제9조(처우) ①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수행기간 중 인사에서 재직교원과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한다.

③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의 보수는 교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의무) ①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교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년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한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의 복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수행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특별연구학기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주저자 논문 1편
2. 산학협력특별연구학기 : 기술이전료 및 산업체연구비수행액 및 순수기여금 점수 200점 이상

③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게재 또는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글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논문 게재 시 "이 논문은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저서 발간 시 서문에 이 저서는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3. 영문표기 : "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leave with support from Kwangwoon University in 20XX"

④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국내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본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 및 지도는 가능하다.

제11조(보수의 반환)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제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 9조에서 정한 보수 전액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00월00월부터 시행한다.

[붙임9]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광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학교규칙 제2장 제7조 (휴업일) 2항,4항, 5항	②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자율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내용수정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24. 일부개정]
학교규칙 제20조 2항 (신입생 입학전형)	②본교 전.편입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정하고, 낙첨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해당학년 평균 결원의 30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 명부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작성한 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동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말까지로 한다.	②----------, ---------- 500% ----------.	범위수정
학교규칙 제37조 1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광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활동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④교권보호----------	법령개정
학업성적 관리규정 제14조 (학생선수의 학사관리 및 보충수업)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선수는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선수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 발생 시 보충학습계획에 따라 사이버학습 등으로 보충학습 실시 후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	신설 용어수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광운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활동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수정

조선영 권순도 오승훈

제2조 (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1.----------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내용 추가
제15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내용 추가

제16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권 보호를 위한 사안 처리 절차 1. 교실 내 지도 2. 즉시 격리 3.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5. 징계 ② 학생의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의 보호를 위한 사안 처리 절차 1. 즉시 격리 2.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4.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5. 위 4호에 따른 징계가 전학일 경우 학교장 추천 전학으로 처리 ③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제2항 5호에 따른 '학교장 추천 전학' 이행 불복시 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별표 (별도 붙임)
제16조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제17조(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내용수정
제18조 (재검토기한)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교외	6호	17~21	전학
		7호		퇴학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붙임10]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정일 : 2019.00.00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인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임원(이사장·이사·감사), 위원의 수당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법인 직원의 수당은 대학교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
2. 각종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 및 외부위원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이 필요한 임원 및 법인 직원
4. 기타 이사장이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원 및 법인 직원

제4조(수당의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지급의 방법) 수당은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참석수당) 임원 및 외부위원에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등에 참석시 [별표1]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법인직원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수당 및 격려금) 법인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기진작 및 업무실적 등을 위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등) 임원·외부위원 및 법인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참고해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영 김선도 오승훈